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9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이기현 · 정진욱 · 윤종균  
남인순 · 김병주 · 신장식  
임미애 · 박지원 · 김교홍  
모경종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 · 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 · 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

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시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시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상설 및 기획 전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문화콘텐츠의 기획·설계·개발·제작·설치·생산·유통·소비·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와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2. “전시문화사업”이란 전시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전시문화사업자”란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공간”이란 기념관·전시관·체험관·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민의 전시문화 향유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문화콘텐츠”란 전시문화산업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전시

공간에 제공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시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문화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시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시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전시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2. 제7조에 따른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전시문화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 제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양성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발

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문인력 및 전시문화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문화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및 전시문화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의 지원
4. 그 밖에 전시문화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0조(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시문화산업의 발전과 전시문화콘텐츠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회사·학교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시문화콘텐츠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시문화사업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전시공간연출 기술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전시공간연출 기술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시공간연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제12조(전시문화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콘텐츠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시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전시문화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